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70-2011

국무총리지시 제7호

1973. 5. 9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행정 기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지시

1972년 5월 8일 지방장관회의시 대통령각하 지시에 의하여
시민들의 허위진정 또는 투서행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민원처리
지침이 하달된 바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도 주소, 성
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
하는 경우에도 민원서류로 간주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아직도
각종 무기명 미워서류를 취급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및 시간의
만비를 초래하고 또한 이를 정보로 활용할 경우 중상 모략하는
사회적 악습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음

1. 각부처는 앞으로 허위진정 또는 투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서
류는 일체 처리하지 말것.
2. 문화공보부는 아무 허위민원서류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지적
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으로써 남을 중상 모략하는 악습
을 일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것. 끝.

국무총리